

충남도립대학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규정

제정[2018.02.28. 규정 제543호]

학칙개정[2019.01.01. 규정 제562호]

학칙개정[2019.10.01. 규정 제562호]

개정[2020.02.28. 규정 제639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남도립대학교의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대학운영 만족도)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교육품질의 지속적인 유지·개선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범위)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범위는 대학의 사명과 책무, 교육과정, 학사관리 및 교수학습, 산학협력, 교육성과, 학생지원, 교직원지원, 재정 및 시설 등 교육 전 분야에 걸쳐 시행한다.

제3조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대상)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대상은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산업체, 교원, 직원, 지역주민 등 교육 참여자 및 관련자로 한다.

제4조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시기)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각 분야 별 연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마감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조사 시기를 변경 할 수 있다.

제5조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 부서) ①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총괄계획과 운영은 기획홍보처에서 실시한다.

②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문외부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대학 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의 검토) ① 대학 자체평가위원회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검토한다.

② 대학 자체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교육 수요자 만족도 총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 수요자 만족도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 수요자 만족도 이행 결과에 관한 사항
4. 기타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및 활용 절차) ① 교육 수요자 만족도 총괄 및 세부계획은 기획홍보처에서 총장에게 보고 후 실시한다.

②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결과는 대학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검토를 거

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 자체평가위원회는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④ 당해 학년도의 평가결과는 다음 학년도 업무계획, 예산수립, 제규정의 개정, 대학 운영의 개선 및 대학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활용한다.

제8조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의 공유)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관련 학과 및 부서에게 공유하여야 한다.

제9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규정543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충남도립대학교 학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①부터④까지 생략

⑤충남도립대학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1항, 제6조1항 중 "기획교무처"를 "기획홍보처"로 한다.

⑥부터⑥까지 생략

부칙(규정639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